



[시행 2020. 12. 10.] [대통령령 제31243호, 2020. 12. 8., 타법개정]

법무부 (법무심의관실) 02-2110-3164

국토교통부 (주택정책과) 044-201-3321, 3334, 4177

- 9 ()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연 1할을 말한다.
-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”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. <개정 2016. 11. 29., 2020. 9. 29.>
[전문개정 2013. 12. 30.]
[제2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<2013. 12. 30.>]

<제31243호, 2020. 12. 8.>(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)

1 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2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까지 생략
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1 중 “「한국감정원법」에 따른 한국감정원(이하 "감정원"이라 한다)”을 “「한국부동산원법」에 따른 한국부동산원(이하 "부동산원"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감정원”을 각각 “부동산원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 기관란 중 “감정원”을 “부동산원”으로 한다.

부터 까지 생략